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97
----------	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9월 7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근거 규정이라 볼 수 없어 「지방재정법」에 반하는 ‘기술혁신사업’과 ‘기술지도사업’에 대한 출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시장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(안 제17조 제1항)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<수정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----- -----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,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동법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----- ----- 「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출연 등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

제20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1. 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3.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
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
2. 위촉직 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 사회
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-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-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1. 당해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 2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 3. 당해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
-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신·구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<u>출연</u>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·기관 및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.</p> <p>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<u>출연하는 경우에는</u>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</p>	<p>제17조(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대한 <u>출연 등</u>)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「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」 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기타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</p> <p>② ----- ----- <u>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 align="center"><신설></p>	<p>제20조의2(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협력사업의 기획·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</u> 2. <u>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</u> 3. <u>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</u>

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

4. 협력사업의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

5.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시 경제기획관,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

2. 위촉직 위원 :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·언론인·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

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

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

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의 심의·조정에서 제척된다.

1. 당해 안전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2. 당해 안전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
3. 당해 안전의 관계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

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·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